

2019회계연도 감사위원회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1,009만 2천원
- 징수결정액 : 842만 5천원
- 실제수납액 : 128만 1천원
- 결손처분액 : 106만원
- 미수납액 : 608만 5천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15.2%(전년도 19.4%)임.

〈2019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결손처분액 (D)	미수납액 (E=B-C-D)	예산수납률 (C/A)	징수율 (C/B)
합 계	10,092	8,425	1,281	1,060	6,085	12.7	15.2
세외수입	10,092	8,425	1,281	1,060	6,085	12.7	15.2
임시적세외수입	10,092	8,425	1,281	1,060	6,085	12.7	15.2
기타수입	10,092	1,281	1,281	-	-	12.7	100.0
그외수입	10,092	1,281	1,281	-	-	12.7	100.0
지난연도수입	-	7,145	-	1,060	6,085	0.0	0.0
지난연도수입	-	7,145	-	1,060	6,085	0.0	0.0

※ 결손처분액=불납결손액+시효결손액,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2. 세출결산

- 예산액 : 15억 1천 3백만원
- 예산증감 : 해당사항 없음.
- 예산현액 : 15억 1천 3백만원
- 지출액 : 14억 3천만원
- 이월액 : 해당사항 없음.
- 불용액 : 8천 3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5.5%(전년도 14.2%)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5.5%(전년도 14.2%)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000천원, 낙찰차액 180천원, 예산집행잔액 74,153천원임.

〈 2019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예산	1,512,853	1,429,520	-	83,333	5.5
사업예산계	1,019,648	972,141	-	47,507	4.7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319,042	314,103	-	4,939	1.5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319,042	314,103	-	4,939	1.5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18,000	17,954	-	46	0.3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272,676	267,983	-	4,693	1.7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28,366	28,166	-	200	0.7
시정 청렴도 향상	156,923	134,068	-	22,855	14.6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률 (%)
시정 청렴도 향상	156,923	134,068	-	22,855	14.6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05,850	88,176	-	17,674	16.7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30,200	30,042	-	158	0.5
온라인 시민청원사이트 서울천만인소 유지보수	20,873	15,850	-	5,023	24.1
안전도시 서울 구현	112,110	107,747	-	4,363	3.9
안전시스템의 정상가동 및 안전위해요인 사전제거	112,110	107,747	-	4,363	3.9
명예하도급호민관 운영	39,940	39,940	-	-	0.0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72,170	67,807	-	4,363	6.0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431,573	416,403	-	15,170	3.5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 부조리신고 활성화	318,180	310,752	-	7,428	2.3
부조리신고 보상	5,000	5,000	-	-	0.0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66,240	62,488	-	3,752	5.7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246,940	243,264	-	3,676	1.5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	49,784	44,685	-	5,099	10.2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49,784	44,685	-	5,099	10.2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찰 운영	63,609	60,786	-	2,823	4.4
기강감찰 운영	63,609	60,786	-	2,823	4.4
일 반 예 산 계	493,205	457,378	-	35,827	7.3
기 본 경 비	493,205	457,378	-	35,827	7.3

가. 예산 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전용

○ 2019. 7. 25.자 공공감사담당관 신설에 따라 초단시간근로자 1명 추가사용을 위하여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사무관 리비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업에서 2백 81만 9천원 총 1건, 2백 81만 9천원을 전용하였음.

다. 예산 이체

○ 2019년 7월 2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에서 '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으로 「기본 경비(사무관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사업비 이체 4백 95만 6천원 총 1건, 4백 95만 6천원을 이체하였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2019. 7. 25.자 공공감사담당관 신설에 따라 공공감사담당관 직원 특정업무경비 지급을 위하여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사무관리비 ⇒ 특정업무경비) 사업에서 7백 3만 4천원 총 1건, 7백 3만 4천원을 변경사용하였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사항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사항 없음.

3. 기 금 결 산 : 해당사항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5. 채 무 결 산 : 해당사항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9년도 말 감사위원회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84개, 현재액은 9천 1백만원 규모임.

〈 2019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2018년도 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9년도 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57	43	-	43	-	16	16	84
	금액	74	38	-	38	-	21	21	91
일반회계	수량	57	43	-	43	-	16	16	84
	금액	74	38	-	38	-	21	21	91

Ⅱ. 검토 의견

1. 세입결산

- 2019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세입은 전년(2018회계연도, 887만원) 대비 15.1% 증가한 1천만원이며, 모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당초 세입예산 편성액(1,009만원) 대비 16.5% 감액된 842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28만원을 수납하여 15.2%의 징수율(미수납액 608만원)을 보이고 있음.

〈2019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결손처분액 (D)	미수납액 (E=B-C-D)	예산수납률 (C/A)	징수율 (C/B)
합 계	10,092	8,425	1,281	1,060	6,085	12.7	15.2
세외수입	10,092	8,425	1,281	1,060	6,085	12.7	15.2
임시적세외수입	10,092	8,425	1,281	1,060	6,085	12.7	15.2
기타수입	10,092	1,281	1,281	-	-	12.7	100.0
그외수입	10,092	1,281	1,281	-	-	12.7	100.0
지난연도수입	-	7,145	-	1,060	6,085	0.0	0.0
지난연도수입	-	7,145	-	1,060	6,085	0.0	0.0

※ 결손처분액=불납결손액+시효결손액,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 감사위원회는 예산편성액(1천만원) 대비 수납률은 12.7%(128만원)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608만원으로 징수결정액(842만원) 대비 미수납률이 72.2%에 달하고 있음.

-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은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128만원만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지난해도 수입은 714만원을 전액 징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결손처분 (106만원)을 하였음.
-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72.2%로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감사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32%만을 징수결정했고, 안전감사담당관 및 조사담당관은 2018회계연도에 이어 2019회계연도에도 세입예산 편성 후 징수결정도 하지 않고 있는바, 징수의사가 없는 관행적 세입편성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19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 중 ‘그외수입’ 현황 〉

(단위:천원)

	예산현액	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
세외수입	10,092	1,281	12.7%	8,425	6,085	72.2%
임시적세외수입	10,092	1,281	12.7%	8,425	6,085	72.2%
기타수입	10,092	1,281	12.7%	1,281	-	-
그외수입	10,092	1,281	12.7%	1,281	-	-
감사담당관	4,008	1,281	32.0%	1,281	-	-
안전감사담당관	1,573	-	-	-	-	-
조사담당관	4,511	-	-	-	-	-

- 감사위원회는 세입을 지난 3년간의 평균 세입액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과소징수 항목(기타수입) 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바, 세입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세입추계 방법 및 산출기초 산정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그외수입’ 중 연가보상비 반납은 감사위원회가 잘못 지급하여 발생한 세입으로, 규정에 맞지 않는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함께 규정에 따른 예산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2005년 소송(정직처분 취소관련)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1백6만원, 세외수입)을 세입처리했어야 하나,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징수하지 못하였고, 2015년말 소멸시효(10년)로 채권이 소멸되었음.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2018회계연도부터 세외수입을 비징수관(감사위원회)에서 결산하도록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미결손처분 채권을 2019회계연도에 결손처분하였음.

※ “비징수관 지난연도수입 결산기준 변경 계획” (2016.8.) 재무국(세무과)

- 2018회계연도부터 비징수관이 세외수입을 결산하도록 함.

〈 시효결손 처분 내역 〉

세목명	확정사건번호	과세일자	납세자명	체납액	최초독촉
소송비용	2005아****	2005.11.15	***	1,059,880원	2006.2.28.

이는 시효결손 처분의 지연으로 보여지며, 결손처분 지연은 징수할 수 없는 세입을 징수결정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 소지가 있는바, 관리책임의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한편, 감사위원회의 세외수입의 대부분이 소송비용 환수라는 점에서 볼 때, 소송비용 회수절차에 따른 차질없는 징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채권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세출결산

가. 예산의 불용

- 감사위원회의 예산현액은 총 15억1천3백만원으로, 이중 14억3천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은 5.5%(2억3천4백만원)수준이며, 서울시 전체 불용율(1.8%)을 상회하고 있는바,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9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요약 〉

(단위:천원)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예산	1,512,853	1,429,699	83,154	5.5
사업 예산 계	1,019,648	972,321	47,327	4.6
일반 예산 계	493,205	457,378	35,827	7.3

- 특히,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사업 등 6개의 사업은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1.8%)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과 대책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9회계연도 감사위원회 불용처리 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국외업무여비	35,000	27,154	7,846	22.4%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포상금	12,600	2,776	9,825	78.0%
온라인 시민 청원사이트 서울천만인소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0,873	15,850	5,023	24.1%
기본경비	국내여비	184,800	149,107	35,693	19.3%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특정업무경비	36,720	32,404	4,316	11.8%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사무관리비	14,740	13,029	1,711	11.6%
기강감찰 운영	사무관리비	26,408	23,154	3,254	12.3%
기강감찰 운영	공공운영비	11,376	9,532	1,844	16.2%

①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은 청렴시책 전파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국외출장여비’의 22.4%(780만원), ‘포상금’의 78.0%(980만원)를 불용 처리하였음.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집행현황 〉

(단위: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05,850	88,176	17,675	16.7%
사무관리비	48,750	48,750	-	0.0%
국외업무여비	35,000	27,154	7,846	22.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0	9,496	4	0.04%
포상금	12,600	2,776	9,825	78.0%

- ‘국외업무여비’의 불용사유는 “하반기 국외업무출장(영국)에서 예상보다 집행액이 적어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철저한 예산추계에 의한 예산 편성이 아닌 전례답습적 예산 편성으로 인한 불용으로 보이는데, 예산이 지역발전 및 시민권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포상금’의 불용사유는 “2019년도 하정청백리상 공모 및 추천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추천자가 없어 미선정”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고, 매년 예산액을 축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서울시의 청렴의식이 본 사업을 실행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한 것은 아닌지, 서울시 청렴도와 별개로 본 사업이 감사위원회 내부에서 단순히 ‘귀찮은 이벤트’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2021년 예산편성 시 예산효율성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하정청백리상은 조례에 따라 수상 목적에 적합한 자가 없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선정절차) 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청렴·결백성과 헌신·봉사성 및 공·사생활의 건실성, 건전사회 기풍조성 기여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하정 청백리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최근 4년간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중 ‘포상금’ 집행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9포상금	12,600	2,776	9,825	78.0%
2018포상금	12,600	1,085	11,515	91.4%
2017포상금	13,400	5,156	8,244	61.5%
2016포상금	15,000	7,596	7,404	49.4%
2015포상금	15,000	9,601	5,399	36.0%

※ 2019년 포상금 불용사유 : 2019년도 하정청백리상 공모 및 추천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추천자가 없어 미선정

※ 2018년 포상금 불용사유 : 2018년도 하정청백리상 공모 결과 2명이 추천되었으나 공적내용이 취지에 부족 또는 부적합하여 위원회 의결로 미선정

※ 2017년 포상금 불용사유 : 하정청백리상 심사위원회 의결 결과 대상1명 본상 2명 중 본상 1명만 선정하여 불용액 발생

※ 2016년 포상금 불용사유 : 하정청백리상 추천자 심사결과 "대상"수상적격자가 없어 "대상" 없이 "본상"만 2명 선발하여 예산 불용됨

※ 2015년 포상금 불용 사유 : 하정청백리 포상 심사결과 '대상' 적격자없어 포상금 일부 미집행('본상' 3명 수여함)

- 특히, 본 사업의 포상금은 78.0%를 불용처리하면서, 사무관리비는 100%, 시책업무추진비는 99.96%를 집행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바, 감사위원회의 예산집행 행태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합리적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온라인 시민 청원사이트 서울천만인소 유지보수

- 본 사업은 시민청원 사이트인 '천만인소'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1천8백만원) 대비 16.9%(3백만원) 증액한 예산(2천87만원)을 편성하여, 75.9%를 집행하여 24.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온라인 시민 청원사이트 서울천만인소 유지보수” 집행현황 〉

(단위: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온라인 시민 청원사이트 서울천만인소 유지보수	20,873	15,850	15,850	5,023
공공운영비	20,873	15,850	15,850	5,023

※ 청원사이트 천만인소 : 시민이 제기한 의견이 온라인 상에서 30일간 1,0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은 경우, 서울시는 담당부서 검토와 연관부서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 하고, 실현 가능한 청원일 경우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는 시민청원 창구임.

- 2019년말 감사위원회는 본 사업을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으로 인해 웹사이트를 폐쇄(민주주의위원회 유사기능으로 대체)하였으나, 2019년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서울천만인소 및 폐쇄 경위〉

□ 서울천만인소 개요

- 창 구 명 : 서울천만인소(<http://petition.seoul.go.kr>)
- 구축기간 : 2013. 3월 ~ 2013. 8월
- 서비스 개시 : 2013. 9. 5.
- 사업예산 : (구축) 136,000천원, (유지보수) 15,850천원/년
- 청원대상 : 시정 및 사회적 이슈 관련 정책건의, 입법 요구 등
- 처리기준 : 30일내 1,000명(안) 이상 지지한 건에 대해 공식답변

□ 폐쇄 추진경과

- 2017.5 서울시 웹사이트 통폐합정비 추진 계획(정보기획담당관-8326)
 - 활용률 저조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또는 유사 사이트로 통폐합
- 2017.7. 서울시 웹사이트 통폐합 정비 심의 결과 통보
 - 서울천만인소 홈페이지 정비대상 : 평가결과 하위 10%
- 2019.3. 서울시 웹사이트 통폐합정비 추진 계획(정보시스템담당관-3725)
 - 서울천만인소 홈페이지 정비대상 : 평가결과 하위 10%
- 2019.7. 홈페이지 통폐합 추진 방법 및 시기 논의
 - 시스템 달라 시스템 통합은 어려움(사회혁신담당관)
 - 서울천만인소 홈페이지를 폐기, 청원은 '민주주의 서울' 에 통합운영
- 운영실적

기 간	신 청 (A+B+C)	접 수 (A)	미접수/철회 (B)	최종 성립 (C)
16.1. ~ 16.12.	1017	251	766	8
17.1. ~ 17.12.	344	31	313	4
18.1. ~ 18.12.	376	92	284	7
총 계	1,737	374	1,363	19

- 감사위원회는 천만인소 유지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의 노임단가 변동 등을 이유로 천만인소 유지보수 비용을 매년 증액하였으나, 실제 집행액 증가분(3년 평균 45만원 수준) 보다, 5배 이상의 예산을 편성(매년 3년 평균 250만원 증액편성)하여 예산 집행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실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전례답습적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시청원사이트 서울천만인소 유지보수 집행현황 〉 (단위:천원)

2017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15,702	14,920	95.0%	17,856	15,520	86.9%	20,873	15,849	75.9%

- 한편, 천만인소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와대의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은 사회적 이슈를 실시간으로 수렴한다는 이유로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천만인소는 “활용률 저조(평가결과 하위 10%)”로 폐쇄되었는데, 감사위원회의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구축비와 유지비는 총 2억 3천 4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감사위원회가 본 청원사이트를 활용이 저조한 상태로 방치하여 대규모 예산이 매몰되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있는 해명과 더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시민청원사이트 서울천만인소 유지보수 비용 〉 (단위:천원)

	합계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사업비	98,406	20,873	17,865	15,702	15,658	12,458	15,850
구축비	136,000	136,000					

③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 본 사업은 대형시설물 등 건설공사장의 위해요인의 사전점검 및 감사를 위해 전년(9천1백만원) 대비 21.2%(1천9백4십만원) 감액한 7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94.0%(6천7백80만원)를 집행하였음.

〈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집행현황 〉 (단위: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72,170	67,807	4,363	6.0%
사무관리비	18,450	18,403	47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00	17,000	-	0.0%
특정업무경비	36,720	32,404	4,316	11.8%

- 다만, 특수업무경비(3,672만원)는 11.8%(324만원)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수업무경비가 1인당 지급되는 경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획 대비 최대 5명의 인력을 실제 운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했는지 여부와 함께 감사위원회가 현실성 있는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 및 적정한 인력 운용으로 계획한 성과가 달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감사위원회의 특정업무경비 잔액 : 4,316천원

※ 불용처리된 특정업무경비로 운용가능 한 인원 4,316천원 ÷ (8만원×12개월) = 4.47명

〈 특정업무경비 중 ‘선택항목’의 기준액 〉 (단위:천원)

구분	대 상	월 액
감사담당공무원	▶ 감사담당관(4급)	100,000
	▶ 감사업무 담당공무원(5급 이하)	80,000
세무담당공무원	▶ 세무담당공무원(과장이하)	100,000
예산담당공무원	▶ 예산담당 및 투자관리(심사) 담당공무원(과장이하)	150,000
- 이하 생략 -		

출처 : 2019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④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 본 사업은 공익침해 신고자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2억4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8.5%를 집행하였으나,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이 평균 이상으로 과도한바,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집행현황 〉

(단위: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246,940	243,264	3,676	1.5%
사무관리비	14,740	13,029	1,711	11.6%
기타보상금	232,200	230,235	1,965	0.8%

- 사무관리비 중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수당 및 운영비의 집행률은 75.5%에 그치는데 반해, 교육관련 운영비의 집행률은 111.0%로 과다 집행하였는바, 이는 집행률이 낮은 위원회 운영비를 교육관련 사업비로 집행한 것으로, 이러한 관행을 탄력적 예산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감사위원회가 사무관리비를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위원회의 평균 출석률과 교육 실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

(단위:천원)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사무관리비	14,740	13,029	1,711	11.6%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	14,740	13,029	1,711	11.6%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	9,400	7,100	2,299	75.5%
교육 강사료 및 교재비 등 운영비	5,340	5,929	△589	111.0%
기타보상금	232,200	230,235	1,965	0.8%

⑤ 기강감찰 운영

- ‘기강감찰 운영’은 비위행위 사전예방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4,978만원) 중 89.8%(4,468만원)를 집행하여 10.2%(51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특히 사무관리비(불용률 10.2%, 325만원), 공공운영비(불용률 12.3%, 184만원)는 매년 과다한 금액을 반복하여 불용처리하고 있음.

〈 “기강감찰 운영” 집행현황 〉

(단위: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기강감찰 운영	49,784	44,685	5,099	10.2%
사무관리비	26,408	23,154	3,254	12.3%
공공운영비	11,376	9,532	1,844	16.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	11,999	1	0.0%

- 사무관리비 차량임차료(1800만원), 방한복(450만원), 감찰장비(39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차량임차료는 기존 차량을 재임차하여 18.0%(324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있음.

통상 감찰부서는 차종, 번호, 색상 변경을 통하여 비위행위 적발의 효과성을 높이나,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노력없이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기존 임차차량을 재계약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공공운영비는 모두 기강감찰팀의 차량연료비(3대분)로, 2019년에는 최근 6년간 평균 집행액보다 19.0%나 더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6.2%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는바, 합리적 예산편성과 집행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최근 예산집행 규모 등을 고려한 예산삭감 또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강감찰 운영” 중 ‘차량연료비’의 불용률 현황〉

(단위:천원)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액	13,101	14,523	14,523	14,523	12,284	11,376	11,376
집행액	7,725	8,646	7,472	5,121	7,585	7,992	9,531
불용액	5,376	5,877	7,051	9,402	4,699	3,384	1,844
집행률	59.0%	59.5%	51.4%	35.3%	61.7%	70.3%	83.8%

나. 예산의 전용 및 변경

① 예산의 전용

- 감사위원회는 공공감사담당관 신설(2019.7.25.)에 따라 초단시간근로자 1명을 추가 운용하기 위하여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업 중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82만원을 전용하였음.

〈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전용 현황 〉

(단위:천원)

세부사업	당초예산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272,676	-	272,676	267,983	4,693	1.7%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576	2,819	23,395	23,236	159	0.7%
사무관리비	178,000	-2,819	168,147	164,578	3,569	2.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00	-	28,500	28,500	-	0.0%
특정업무경비	45,600	-	52,634	51,669	965	1.8%

※ 감사위원회 전용 사유 : 2019년 7월 25일자 감사위원회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감사담당관을 신설하였고, 이에 감사업무수행 수당인 특정업무경비(7,034천원), 초단시간 근로자 1명을 추가 사용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2,819천원)를 각각 전용함.(전용일:2019.7.25.)

- 전용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집행잔액(0.7%, 15만9천원)이 발생하여 세밀한 예산 추계에 따라 필요한 금액만을 전용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서울에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울시 생활임금(2019년 기준 10,148원)을 적용한 것이 아닌 최저임금(2019년 기준 8,350원)을 적용하였는바, 서울시 내부에서 조차 서울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바, 감사위원회의 조례준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②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후 집행잔액

- 본 사업(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의 ‘사무관리비’는 감사위원회 운영(4천8백만원), 외부전문가 감사참여(1억2천만원), 감사위원회 워크숍(1천만원)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나,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전용(282만원) 및 변경 사용(703만원, ‘사무관리비’ → ‘특정업무경비’)하였음.

전용과 변경사용 후에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356만원, 2.1%)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여 변경 사용한 특정업무경비에서도 집행잔액(96만5천원, 1.8%)이 발생하였는바, 사무관리비의 과다 편성 여부와 함께 전용과 변경사용이 세밀한 계획과 합리적 비용추계에 따라 실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변경사용 현황〉

(단위:천원)

세부사업	당초예산	전용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272,676	-	-	272,676	267,983	4,693	1.7%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576	2,819	-	23,395	23,236	159	0.7%
사무관리비	178,000	-2,819	-7,034	168,147	164,578	3,569	2.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00	-	-	28,500	28,500	-	0.0%
특정업무경비	45,600	-	7,034	52,634	51,669	965	1.8%

- 또한,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안전감사 및 조사담당관 등 감사위원회 전체에서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특정업무경비는 서울시 예산편성 및 운용기준에 따라 개인(4급이하)에게, 매월, 정액(4급 12만원, 5급이하 8만원)으로 지급된다는 점으로 볼 때, 감사위원회의 인력 운용 계획이 부실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관행적으로 예산을 과다편성하지 않도록 하는 감사위원회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9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특정업무경비” 집행현황 〉

(단위:천원)

항목	당초예산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감사담당관 특정업무경비	45,600	7,034	52,634	51,669	965	1.8%
안전감사담당관 특정업무경비	36,720	-	36,720	32,404	4,316	11.8%
조사담당관 특정업무경비	48,240	-	48,240	44,586	3,654	7.6%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정찬일
------	-----	-------	-----